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0
----------	-----

2021. 6. 23.(수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1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6월 11일

(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국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특별장학생을 선정하여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였으나, 2021학년도 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의 존속이 무의미 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,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에 따라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금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54호, 2021. 3. 23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